

	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운영규칙		규정번호	4-0-6
			제정일자	2011.08.02
			개정일자	2018.01.01
			개정번호	Ver.3
			총페이지	2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학칙 제62조제7호에 의해 설치된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1.1>

제2조(센터의 목적) 센터는 본 대학의 발전계획과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우수한 공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된 공학기술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1.1>

제3조(사업) 센터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8.1.1>

1. 공학기술교육혁신 사업방향 수립
2. 공학기술교육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
3. 공학기술교육혁신 관련 세미나 참가 및 학술활동 지원
4. <삭제 2018.1.1>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센터장)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두되 임명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항을 따른다. <개정 2018.1.1>

- ① 센터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직원 및 연구원) 센터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8.1.1>

제 3 장 위 원 회

제6조(위원회)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‘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’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8.1.1>

제7조(구성과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.1.1>

- ②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된다. <개정 2018.1.1>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8.1.1>
-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행정처리를 위한 간사 1인을 직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.1>

제8조(위원회 임무)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한다. <개정 2018.1.1>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1.1>
4. 센터 사업의 운영,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<신설 2018.1.1>
5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해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<개정 2018.1.1>

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고,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8.1.1>
- ③ 의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진행된 회의나 기타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거 심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신설 2018.1.1>